

학회지 게재논문 투고규정

제정 1997. 7. 1
개정 2001. 6. 16
전면개정 2003. 6. 28

제1조(투고자격)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고, 명예회원이나 특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. 그러나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

제2조(논문의 내용) ① 투고할 논문은 원칙적으로 환경법학과 관련있는 내용이어야 한다.
② 학회발표논문과 연구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,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.

제3조(투고요령) 투고할 논문은 원고작성지침에 맞추어 디스켓과 출력본 3부를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원고작성) ① 원고분량은 A4용지 15매 내외(도표, 사진, 참고문헌 포함하여 원고지 120매 내외)로 하여야 한다. 분량초과시에는 게재료 외에 별도로 초과 1매당 2만원을 자비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원고체제는 다음 각호로 하여야 한다.

- (1) 표지는 한·영제목, 필자명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2) 국문은 영문 또는 독문 등의 외국어초록, 영문 또는 독문 등은 국문초록을 100 단어 내외로 첨부하여야 한다. 초록에는 검색편의를 위한 주제어를 5개 이상 지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.
- (3) 원고는 본문, 요약, 참고문헌 순으로 정리한다.
- (4)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(First Author)와 공동저자(Corresponding Author)를 구분하고 주저자·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.

③ 원고작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.

- (1) 목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- I. 로마숫자(중앙으로)
 - 1. 아라비아 숫자(2칸 들여쓰기)
 - (1) 팔호 숫자(3칸 들여쓰기)
 - (가) 팔호 한글(5칸 들여쓰기)
 - 1) 반팔호 숫자

(2)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으로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으나, 한자의 사용은 10% 내외로 한다.

(3)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한다.

가. 인용문헌의 전거는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·논 문 : 필자, 논문제목, 제재학술지명, 권, 호수, 연도, 면

·단 행 본 : 저자, 서명, 출판사, 연도, 면

·기념논문집 :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○○○ 선생기념논문 「기념논문집명」, 면수.

·판 결 인 용 : 대법원 19○○. ○○. ○○. 선고, ○○다○○○○○ 판결(법원공보 19○○년, ○○○면) 또는 대판 19○○. ○○. ○○, ○○다○○○○○

나. 반복인용되는 문헌의 경우는 저자 또는 필자명, 전계서 또는 전제논문 등으로 표시하되, 출판연도를 표시하여 구분한다.

·논 문 : 필자, 전제논문, 출판연도

·단행본 : 저자, 전계서, 출판연도 또는 저자, 전계서(상 또는 하), 출판연도

다.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는 저자명, 판수, 연도를 표시한다.

(4)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.

가. 단행본의 경우

·동양서 : 저자, 「책명」, 출판사, 출판연도

·서양서 : 저자, 책명(이탤릭체), 출판지 : 출판사, 출판연도

(독일문헌의 경우 출판사를 생략한다)

나. 논문의 경우

·동양서 : 필자, “논문명”, 「간행물의 명칭」, 제 권, 제 호(발행연월)

·서양서 : 필자, 논문명, 간행물의 명칭(이탤릭체), 권수, 호수, 발행연월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